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00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市 평생교육 정책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'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'을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·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(재)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
- 관련법령
 - (공통)법령 : 「민법」 제32조
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 - (개별)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
 - 조 레 : 「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24조
‘시장은 진흥원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
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
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’
- 출연금액 : 4,508,010천원
(인건비 1,248,140, 운영경비 895,719, 사업비 2,103,542, 예비비 260,609)

나. 주요사업

-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 기반 구축
 - 서울시 평생 교육 혁신 정책 개발, 서울시 평생학습기관 실태조사 등
-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
 -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'동네배움터' 운영,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
-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
 -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 개최,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
- 평생교육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
 -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사업 등
-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 학교 운영
 - 모두의 학교 운영 체제 구축, 모두의 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지원하고,
- 평생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, 서울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평생학습 사업 추진, 모두의 학교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울형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획팀 강성준(☎2133-3967)